



(주)시대에듀

2019년 해양경찰 1차 해사법규

2019.04.13. 시행

포세이돈 해양경찰고시연구소

01 도선사가 승선하여 입박하는 선박에 대해서 해양경찰관이 「해사안전법」에 따라 운항자 등의 음주여부를 측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음주측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 ㉠ 도선사
- ㉡ 당직 이등항해사
- ㉢ 기관장
- ㉣ 선장
- ㉤ 조리장
- ㉥ 당직타수

- ① 5명 ② 4명
- ③ 3명 ④ 2명

[해설]

음주측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 ㉡, ㉣, ㉥ 4명이다(「해사안전법」 제41조).

「해사안전법」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뉘고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하고,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 및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같다]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선(이하 “도선”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이하 “운항자”라 한다) 또는 제1항에 따른 도선을 하는 사람(이하 “도선사”라 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
 1.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지거나 해질 우려가 있는 등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도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삭제
- ⑤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답] ②

02 다음 중 「선박법」상 선박의 뒷부분에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의 등대 또는 해안망루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② 외국항을 출입하는 경우
- ③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④ 그 밖에 지방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해설]

선박의 뒷부분에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경우는 해군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이다.

「선박법」 제11조(국기 게양과 표시)

한국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고 그 명칭, 선적항, 흘수(吃水)의 치수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선박법 시행규칙」 제16조(국기의 게양)

한국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선박의 뒷부분에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총톤수 50톤 미만이거나 최대속력이 25노트 이상인 선박은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의 바깥벽 양 측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등대 또는 해안망루(海岸望樓)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외국항을 출입하는 경우
3. 해군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청장이 요구한 경우

[답] ③

03 다음 내용 중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의 범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
- ②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지도
- ③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
- ④ 해양시설에서의 방제선 등의 배치·설치 및 자재·약제의 비치 상황에 관한 검사

[해설]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0조(해양환경감시원)

②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해양환경감시원
 - 가. 제89조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
 - 나.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
 - 다. 해양공간에 대한 수질 및 오염원 조사활동
 - 라. 폐기물해양배출업자, 폐기물해양수거업자,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 및 폐기물 위탁자의 사업시설에 대한 지도·검사
 - 마. 환경관리해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조사 활동
 - 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다)
2. 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환경감시원
 - 가. 제94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
 - 나.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로 한정한다)
 - 다.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지도
 - 라. 해양시설에서의 방제선 등의 배치·설치 및 자재·약제의 비치 상황에 관한 검사
 - 마. 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배출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조사활동 및 감식·분석을 위한 오염시료 채취 등

[답] ③

04 다음의 甲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의거 3급 공무원으로 앞으로 몇 년을 더 근무하여야 중앙심판원의 심판관 자격이 되는가?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이 되고자 하는 甲은 과거에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3년간 근무하였으며, 2019년 4월 13일 처음으로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해양수산행정 분야에 임용되었다.

- ① 1년
- ② 2년
- ③ 3년
- ④ 4년

[해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만 더 근무하면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 ①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중앙심판원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 ②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2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의 해기사면허(이하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4년 이상인 사람

[답] ①

05 「수상레저안전법」상 누구든지 해 진 후 30분부터 해 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는 야간 운항장비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라디오
- ㉡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 ㉢ 야간 조난신호장비
- ㉣ 통신기기
- ㉤ 전등
- ㉥ 항해등
- ㉦ 초단파대 무선설비
- ㉧ 나침반
- ㉨ 레이더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야간 운항장비가 아닌 것은 ㉠, ㉣, ㉨ 3개이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야간 운항장비)

- ① 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운항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등
 2. 나침반
 3. 야간 조난신호장비
 4. 통신기기
 5. 전등
 6. 구명튜브
 7. 소화기
 8. 자기점화등
 9. 위성항법장치
 10. 등(燈)이 부착된 구명조끼

[답] ②

06 다음은 「낙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낙시어선이 갖추어야 할 구명설비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수의 합은?

- ㉠ 구명조끼는 최대승선인원의 ()% 이상에 해당하는 수를 갖추고, 이 중 ()%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 구명부환은 최대승선인원의 ()% 이상에 해당하는 수를 갖추어야 한다.

- ① 140 ② 150
③ 160 ④ 170

[해설]

- ㉠ 구명조끼는 최대승선인원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수를 갖추어야 하고, 이 중 20%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 구명부환은 최대승선인원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수를 갖추어야 한다.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4(낙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

구분	설비
1. 안전·구명설비	가.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 중 20%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최대승선인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다. 지름 10mm 이상, 길이 30m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 라.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마. 난간 손잡이(hand rail) 바. 유효기간 이내의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사. 자기점화등(自己點火燈) 1개 이상 아. 최대승선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낙시어선에 한정한다) 자. 선박 자동식별장치(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낙시어선에 한정한다) 차. 승객이 이용하는 선실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낙시어선에 한정한다) 카. 항해용 레이더(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낙시어선에 한정한다) 타. 위성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를 말하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낙시어선에 한정한다)
2. 소화설비	가. 총톤수 5톤 미만 낙시어선의 경우 :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 나. 총톤수 5톤 이상 낙시어선의 경우 :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
3. 전기설비	낙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

4. 그 밖의 설비	가.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 나. 용량이 40리터 이상인 쓰레기통 2개 이상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	--

비고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 중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설비는 같은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답] ④

07 「해사안전법」상 교통안전특정해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특정해역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속여객선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행시각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화물운반선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력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 ④ 해양경찰서장은 거대선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인선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

[해설]

②·③ 해양경찰서장이 주체이다.

「해사안전법」 제11조(거대선 등의 항행안전확보 조치)

해양경찰서장은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통행시각의 변경
2. 항로의 변경
3. 제한된 시계의 경우 선박의 항행 제한
4. 속력의 제한
5. 안내선의 사용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답] ①

08 「수상레저안전법」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 유·도선사업, 체육시설업, 낚시어선업은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 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3개월 이내이다.
- ㉢ 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등록 전에 해당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서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 소유자는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존재 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

[해설]

- ㉠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하며, 해당 기간 중에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 이전에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다(「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 ㉡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등록 전에 해당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제3항).

[답] ②

09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 ㉠ 외교부장관
- ㉡ 울산광역시장
- ㉢ 충청북도지사
- ㉣ 해양경찰청장
- ㉤ 행정처분을 요구한 검사

① 5명

② 4명

③ 3명

④ 2명

[해설]

㉠, ㉡, ㉢ 3명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행정처분 상황의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처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도지사(충청북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도지사
2. 해양경찰청장
3. 영 제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요구한 검사

[답] ③

10 「해양환경관리법」상 일정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었을 때 신고의무와 관련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 사고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 甲은 해양경찰서장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하였다.
- ② 선저폐수 이송 작업 중 실수로 이를 해양에 배출한 기관사 乙은 해양경찰청장에게 배출사실을 신고하였다.
- ③ 인천 덕적도 앞 바다에서 조업 중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한 닻타망 어선의 선장 丙은 관련 사실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였다.
- ④ 기름 저장시설 관리자 丁은 해당 시설에서 기름이 바다로 배출된 것을 발견하고 관련 사실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였다.

[해설]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 또는 해양시설의 관리자. 이 경우 당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3.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한 자

[답] ③

11 다음은 해양과 관련된 각종 사업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의 숫자들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 ㉠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유·도선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그 지위를 승계한다.
- ㉡ 「낙시 관리 및 육성법」상 낙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사망 등으로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개월 이내에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 「해사안전법」상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① ㉠ - 6, ㉡ - 6, ㉢ - 7
- ② ㉠ - 6, ㉡ - 1, ㉢ - 30
- ③ ㉠ - 3, ㉡ - 6, ㉢ - 7
- ④ ㉠ - 3, ㉡ - 1, ㉢ - 20

[해설]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3 제1항 제1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3(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유·도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로 한정한다)

㉡ 「낙시관리 및 육성법」 제21조 제3항

「낙시관리 및 육성법」 제21조(낙시터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낙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낙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낙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과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낙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낙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㉔ 「해사안전법」 제21조 제2항

「해사안전법」 제21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 ① 제19조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그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 ②

12 「선박안전법」상 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 중 제1종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선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 ㉠ 위험물운반선 ㉡ 잠수선
㉢ 여객선 ㉣ 예인선
㉤ 고속선 ㉥ 여객용 수면비행선박

- ① ㉡, ㉢, ㉤ ② ㉡, ㉢, ㉣
③ ㉠, ㉢ ④ ㉠, ㉤

[해설]

제1종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선박은 '여객선, 원자력선, 잠수선, 고속선, 수면비행선박(여객용만 해당한다) 및 선령 30년 이상의 선박으로서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이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중간검사)

- ②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종류	검사시기
가. 여객선, 원자력선, 잠수선, 고속선, 수면비행선박(여객용만 해당한다) 및 선령 30년 이상 선박으로서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	제1종 중간 검사	검사기준일 전 후 3개월 이내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1)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선박(가목의 선박은 제외한다)) 2) 삭제 3) 준설토 운반부선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 4)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인 범선	제1종 중간 검사	정기검사 후 두 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	제1종 중간 검사	정기검사 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다만, 선저검사는 지난 번 선저검사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종 중간 검사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은 제외한다)

비고

1. "고속선"이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고속선을 말한다.
2. "선저검사"란 선박의 밑부분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답] ④

13 다음은 「낙시 관리 및 육성법」상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보고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사고 장소가 내수면인 경우에는 사고발생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에게, 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 - 소방서장 ㉡ - 해양경찰서장
② ㉠ - 소방서장 ㉡ - 지방해양수산청장
③ ㉠ - 시장·군수·구청장 ㉡ - 해양경찰서장
④ ㉠ - 시장·군수·구청장 ㉡ - 지방해양수산청장

[해설]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고 장소가 내수면인 경우에는 사고발생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7조 제1항).

[답] ③

14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에 따라 설립된 (㉡)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 (㉢)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단어는?

㉠	㉡	㉢
① 선박안전법	해운조합	관리이사
② 해운법	선박안전기술공단	운항조정자
③ 해운법	해운조합	사업자
④ 선박안전법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운항관리자

[해설]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해운법」 제22조 제2항).

다만, 2018년 12월 31일에 새롭게 제정되어 2019년 7월 1일에 시행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해운법」 제22조 제2항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해운법」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시행 2019.7.1.〉

[답] ④

15 「도선법」상 강제도선구 및 강제도선 선박에 관련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모든 수의 합은?

- ㉠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는 ()개이다.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톤 이상인 선박이 강제도선구에서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톤 이상인 선박이 강제도선구에서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 ① 1,012 ② 1,013
③ 812 ④ 813

[해설]

- ㉠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 4
㉡ 「도선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도선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강제 도선구 및 강제 도선의 면제)

-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도선사의 도선(이하 “강제 도선”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는 별표 4와 같다.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 4(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

1. 인천항 도선구 중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인천항·경인항의 해상구역과 경인항 서해갑문으로부터 한강갑문까지의 구역
2. 대산항 도선구(보령항과 태안항을 포함한다)
3. 군산항 도선구
4. 목포항 도선구 중 장좌도 북단, 외달도 등대, 북위 34도46분12초 동경 126도16분00초, 화원등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을 포함한 항계 안의 전 구역
5. 여수항 도선구
6. 마산항 도선구
7. 부산항 도선구
8. 울산항 도선구
9. 포항항 도선구. 다만, 총톤수 5천톤 미만의 선박이 강제도선구 밖에서 강제 도선구 안에 있는 정박지에 정박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강제도선 대상에서 제외 가능
10. 동해항 도선구
11. 평택·당진항 도선구 중 대부도 남서끝단(북위 37도11분52초 동경 126도32분08초), 입파도선점(북위 37도08분10초 동경 126도29분53초), 학산서(북위 37도07분22초 동경 126도31분48초), 입파도 북동단(북위 37도06분44초 동경 126도32분29초), 국화도 등단(북위 37도03분40초 동경 126도33분37초),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각(북위 37도02분10초 동경 126도33분35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구역
12. 제주항 도선구

「도선법」 제20조(강제 도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 다만, 부선(靜船)인 경우에는 예선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답] ①

16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영해 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이 행하되, 미리 (㉡)의 심의를 거쳐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	㉡	㉢
①	국방부장관	국무회의	대통령
②	외교부장관	관계장관회의	국무총리
③	해양수산부장관	관계장관회의	대통령
④	해양경찰청장	국무회의	국무총리

[해설]

영해 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답] ①

17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가지는 관할권이 아닌 것은?

- ① 해양과학 조사
- ②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 ③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 ④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

[해설]

④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가지는 관할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답] ④

18 다음은 「해양과학조사법」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적은 것은?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을 거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①	6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②	3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③	3	해양수산부장관	외교부장관
④	6	해양수산부장관	외교부장관

[해설]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해양과학조사법」 제6조 제2항).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 ①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이하 “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답] ①

19 다음 중 「선박안전조업규칙」상 출항·입항 및 조업에 관하여 군부대의 통제를 받는 지역은 모두 몇 개인가?

- | | | | |
|-------|-------|-------|-------|
| ㉠ 강화도 | ㉡ 대청도 | ㉢ 마라도 | ㉣ 백령도 |
| ㉤ 완도 | ㉥ 울릉도 | ㉦ 연평도 | ㉧ 진도 |
| ㉨ 추자도 | ㉩ 한산도 | | |

- ① 4개
- ② 5개
- ③ 6개
- ④ 7개

[해설]

출항·입항 및 조업에 관하여 군부대의 통제를 받는 지역은 ㉠, ㉡, ㉢, ㉤ 4개이다.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4조(관할 군부대장의 통제)

제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강화도에 설치되어 있는 신고기관은 선박의 출항·입항 및 조업에 관하여 그 지역의 관할 군부대장의 통제를 받는다.

[답] ①

20 다음 중 「어선법」상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선박은 모두 몇 개인가?

- ㉠ 무동력어선
-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 ㉢ 낚시어선
- ㉣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에 종사하는 어선
- ㉤ 서해특정해역에서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부속선

- ① 5개
- ② 4개
- ③ 3개
- ④ 2개

[해설]

② 「어선법」상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선박은 ㉠, ㉡, ㉢, ㉣ 4개이다.

「어선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등)

- ① 법 제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1. 무동력어선
 2.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에 종사하는 어선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7조 제1항·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어선.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은 제외한다.
 5.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서해특정 해역에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부속선
 6.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舷端)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기관실 위벽(圍壁)만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

[답] ②



해양경찰 도서도
(주)시대고시기획에서
만들면 다르다!



해양경찰 출신 집필진이 정리
출제유형 완.전.정.복!

<https://c11.kr/8h05>



해양경찰 출신 집필진이 감수
쉽게 읽는 해사법규!

<https://c11.kr/8h07>



해양경찰 출신 집필진이 집필
가장 효율적인 학습 구성!

<https://c11.kr/8h0a>



해양경찰 출신 집필진이 선별했다!
2019 간부후보생 시험 완전 적중!

<https://c11.kr/8h0d>



해양경찰 출신 집필진의 적중노트!
핵심이론과 적중 OX 문제

<https://c11.kr/8h04>



올해 해양경찰은 바로 나야 나!
면접 및 적성검사 족보

<https://c11.kr/8h0e>

(링크를 클릭하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시대에듀X자몽

다양한 학습자료를 만나보세요!

시대에듀 홈페이지 www.sdedu.co.kr
공시생 자몽 블로그 <https://blog.naver.com/jamongsidae>
공기출 자몽 게시판 <https://0gichul.com/jamong>

(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시생
자몽